

# 대체복무요원 배치 관련 안내문

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생활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## □ 배치 기준

- 각 기관 정·현원, 신규교육 성적, 대원 연고지, 결혼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치
    - ① 신규교육 성적(50%) 반영
      - \* 신규 교육과정 중 학습평가 및 생활평가 성적 반영
    - ② 연고지(30%) 반영
      - \* 주소지(연고)와 희망기관과의 거리에 따라 배점
    - ③ 결혼(자녀) 유무(20%) 반영
      - \* 결혼(사실혼 포함), 자녀 유무에 따라 가점 부여
- ⇒ 신규교육 성적(50%), 연고지(30%), 결혼 유무(20%)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치

## □ 자료 제출

- 제출 시기 :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 시
  - ※ 입교 당일 제출 원칙(신규 교육 2주차 수요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한해 인정)
- 제출 자료 : 기혼자(혼인증명서 등)
  - ※ 「대체역 복무관리규칙」 제53조에서 정하는 대체업무\*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(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)
- 결혼(자녀) 유무

구 분	기 혼	자녀 1명	자녀 2명	자녀 3명 이상
배 점	10점	3점	7점	10점
* 혼인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(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증빙자료 제출)				

## ※ 배치 기관 문의 관련

- 대체역 수급 불균형 우려, 현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기관은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으니,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 대체복무팀(☎ 02-2110-388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## 법 무 부 장 관